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



구 미 시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 1. 보고이유

- 지자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6조
- 구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 필 요 성 : 4년 주기 법정계획

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절차



라. 세부추진일정

| 연번 | 시 기                         | 내 용                                                                                         | 비고 |
|----|-----------------------------|---------------------------------------------------------------------------------------------|----|
| 1  | 2022. 9월                    |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앙 지침 교육 및 시달                                                                |    |
| 2  | 2022. 9월<br>~<br>2023. 3월   | ▶ 계획 수립 TF팀 구성 및 운영(구미·선산보건소)                                                               |    |
| 3  | 2022. 10월                   | ▶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10. 4 ~ 10. 19.)                                                     |    |
| 4  | 2022. 10월<br>~<br>2022. 12월 |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성과 및 한계 토의 및 자료수집<br>▶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수립 및 세부과제자료 수집             |    |
| 5  | 2023. 1월<br>~<br>2023. 3월   |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연구용역<br>(지역사회 현황분석, 설문조사 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분석, 제8기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분석 및 작성 등) |    |
| 6  | 2023. 1월<br>~<br>2023. 3월   |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최종(안) 작성<br>▶ 주민공고(2. 20 ~ 3. 6.)<br>▶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서면) (3. 7 ~ 3. 8.)    |    |
| 7  | 2023. 3월                    | ▶ 의회 보고 및 계획서 道 제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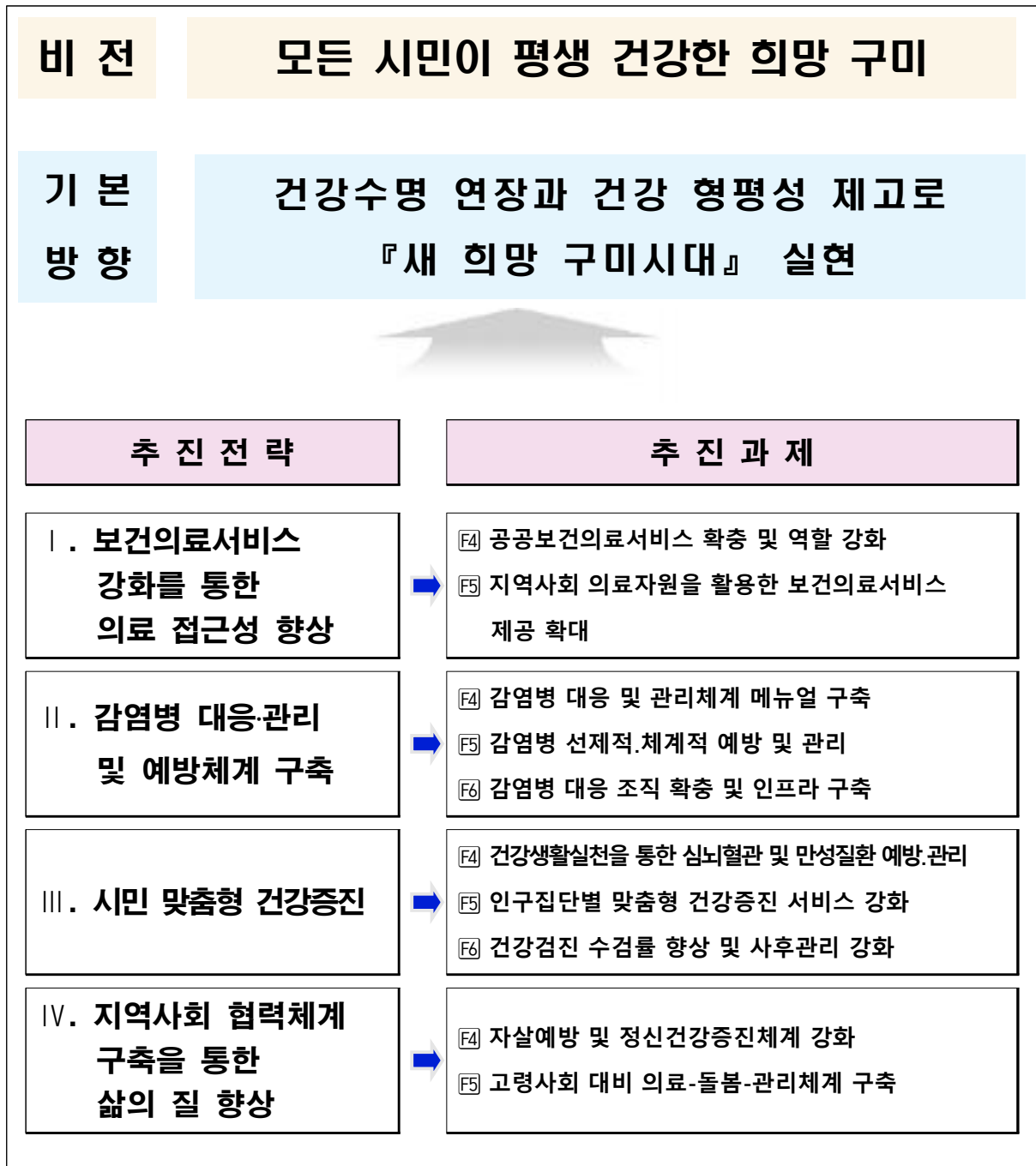
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

- 지역사회 현황 분석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한계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
- 성과관리계획

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전략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3. 붙임자료 : 관계 법령 1부. 끝.

## 관계법령

### □ 『지역보건법』

####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의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의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 2. 지역현황과 전망
  -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 4.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 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 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8.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공급
  9.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10.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11.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12.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협력·연계
  13. 그 밖에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되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보건의료시책에 맞춰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시·도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획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시·군·구의회의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시·도 의회에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 『구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 관 부 서     |       | 보건행정과               |
|-------------|-------|---------------------|
| 입<br>안<br>자 | 과 장   | 임 명 섭               |
|             | 팀 장   | 박 동 주               |
|             | 담 당 자 | 박 현 진<br>(480-4012) |